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스마트폰은 국민들의 의사소통, 정보전달, 금전적인 거래 등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어 가입단계부터 안전하게 개통·활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 취약으로 인해 스마트폰이 타인 명의로 불법 개통되고,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

이에 알뜰폰사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알뜰폰사들의 보안역량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뜰폰사업자들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에 포함

(제36조의7제2항의 하단 신설)

-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제외 대상자 중에서 알뜰폰사업자를 제외함으로써 신고 의무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

나.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 명확화(제49조제1항제1호)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현행 법령상의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여 다른 대상자들도 포함하여 해석될 수 있는 바, 현재 적용대상

자들로만 한정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설치·보유한 자로 한정하여 정의

다. 알뜰폰사업자들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제49조제1항제2호)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알뜰폰사업자들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재판매를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제4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보유하고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u>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u> <u><신 설></u> <u><신 설></u> ② (생 략)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 <u>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보유하고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u> <u>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u>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연 락 처	(044) 202 - 6463